2017년 원광보건대학교 2차 1급 승급 교육 추가 모집 안내

2015년부터 보육교직원 일반(원장, 보육교사) 및 특별직무(영아), 승급교육(1급) 교육신청은 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- □ 추가신청기간: 2017년 8월 25일(금), AM 00:00부터 선착순 신청~ 9월 8일(금)
- □ 보수교육 일정 :

교육과정 (시간)		교 육 기간	시 간	교육 정원	교육비			비
					금액	추가신청기 간	납부기간	고
승급 교육	1급 승급 교육(2기) (80)	10/13~11/11 (금, 토)	(금)17:30~22:30 (토)09:00~19:50	150	12 만원	8.25(금) ~ 9.8(금)	9.11(월) ~ 9.22(금)	

- ※ 교육비 납부계좌: 전북은행 1013-01-0751143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
- ※ 납부기간 동안 교육비를 입금하지 않을 시 교육을 못 받을 수 있음
- ※ 교육비 납부시 입금자명을 반드시 본의 명의로 입금
 - □ 교육장소: 원광보건대학교 보건관 지하1층 세미나실, 보건관 107 강의실
 - □ 교육신청방법
 - 현 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▷ 교육생이 직접 신청

어린이집지원시스템 ▷ 원장님이 대신 신청

● 비현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 ▷ 교육생이 직접 신청

구 분	접속 사이트	신청방법
교육대상자가 직접 신청 시	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(http://chrd.childcare.go.kr)	회원가입-마이페이지-교육관리-교육신청 -교육정보입력-검색-교육선택-상세보기- 교육신청
어린이집 원장이 해당 보육교직원 신청 시	어린이집지원시스템 (http://cpms.childcare.go.kr)	메뉴보기-교육통합-교육정보입력-검색- 교육선택-상세보기-교육신청

- ※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장님이 대신 신청한 교육과정은 개인이 보육 인력국가자격증 포털에서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함.
- 교육생의 진행상태 값이 "승인"일 때만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
 - ※ 교육승인 절차 : 교육대상자 교육신청 → 선정(구·군) → 최종 승인(도)
 - ※ 교육진행상태 확인방법 : [마이페이지]-[교육관리]-[교육진행상태조회]-[검색]
- 교육신청 시 연락처 수정 방법(휴대전화번호 필수 입력)
 - 현 직 : 어린이집지원시스템 ▷ 원장님이 직접 수정
 - ([어린이집운영]-[보육교직원관리]-[교직원선택]-[세부내역])
 - 비현직 : 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▷ 교육신청 시 연락처 직접 수정
- □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기준

교육구분		교 육 대 상	교육 시간	비	고
승급	1급 승급 교육	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이 경과한 자 및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보육업무 경력이 만 6개월이 경과한 자	80시간	이수하 하는	

- ※ 교육시작일 전까지 보육업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함
- ※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사나 치료사로 근무하는 자도 일반·특별직무 교육대상자임
-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 기준인 '보육업무 경력'
 -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, 보육교사, 특수교사, 치료사 및 육아종합지 원센터에서 센터의 장, 보육전문요원, 특수교사로 근무한 경력과 유아교 육법에 의한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, 원감, 수석교사, 교사로 근무한 경력

- ※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「근로기준법」및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가기간(1개월 이상)은 보육업무 경력 에서 제외
- ※ 주당 30 시간 미만 근무하는 보육교사로 합산한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일, 209시간인 경우 1개월의 경력으로 인정

□ 교육 신청취소 및 교육포기 방법

- 신청취소 : 진행 상태값이 "신청" 일 경우 신청취소
- 교육포기 : 진행 상태값이 "신청" 이후 단계 값일 경우 교육포기(보육인력국가자격증 포털에서만 가능)
 - ※ 개인사정으로 교육수강이 어려운 경우 반드시 교육신청 및 교육포기를 하셔야 다음 교육신청이 가능함

□ 유의사항:

- 교육정원 초과 시 선착순 마감
- 교육희망자수가 적을 경우 교육 개설이 취소 수 있음
- 교육 취소 시 시작 3일 전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청취소 및 교육포기 처리를 하지 않을 시 수강료 환불금 없음
 (교육 시작 후 중도 포기 또는 대리 출석으로 취소될 경우 환불금 없음)
- <u>보육인력국가자격증포털 공지사항에 교육통합관리시스템 매뉴얼</u> 게시되어 있으므로 참고바람

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(T. 840-1154)